

광주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2나592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문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우스

담당변호사 김승휘, 황흥택

피고, 피항소인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시복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한종수

변 론 종 결 2023. 6. 9.

판 결 선 고 2023. 6. 23.

제1 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5. 31. 선고 2021가단512452 판결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광주 북구 E 답 2116㎡ 중 피고 C, D는 피고 B에게 각 1/8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2. 7. 4. 접수 제1310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1/4 지분에 관하여 소장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C, D는 원고에게 각 50,878,550원씩 및 위 돈 중 각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1.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878,550원에 대하여는 2019. 11. 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봐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쪽 13행 “F파”를 “AA파”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7행 “원인으롤”을 “원인으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1행 “2019나6603 판결” 뒤에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6행 내지 8행의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원고가 1980. 1. 30. 매수하여 1980. 2. 14.경 원고 종중원인 O, P, 종부였던 Q 및 종중원은 아니었으나 친밀하게 지내던 N에게 각 1/4 지분씩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것인데,』

○ 제1심 판결문 제7쪽 5행과 6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미치는 것이지만,

당사자가 그러한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기판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70181 판결 참조).』

○ 제1심 판결문 제7쪽 15행 내지 1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거시 증거 및 갑 7호증, 을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소인 선행소송에서 판단한 소송요건의 흠결이 보완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7018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원고가 G의 후손들 중 성년 이상의 남녀들로 구성된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서의 일정한 조직력을 갖추었다거나 사회적 실체를 가지는 등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종중이 실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8쪽 “③” 부분(10행 내지 18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더욱이, 선행소송의 확정에 앞서 개최된 2019. 4. 7.자 총회결의, 2020. 3. 29.자 총회결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M 및 M의 자녀, 형제·자매, 조카 및 W(L의 장손인 AB의 딸이다), 즉 G의 특정 후손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선행 소송 이후 2021. 10. 10. 총회결의에 참여한 것으로 되어있는 사람들 역시 이와 유사한 구성으로 G의 다른 후손(I, J, K의 후손)은 찾을 수 없는 점, 그 외에 달리 원고 구성원들이 고유 의미의 종중 목적 달성을 위한 지속적 활동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 구성원들이 다른 후손들과 조직을 갖추고 종중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하여 원고가 고유 의미의 종중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갖추었다거나 선행소송에서 판단된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9쪽 “4. 이 사건 소제기를 위한 원고 총회의 소집절차의 적법 여부”를 삭제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흥권, 판사 장유나, 판사 김동희